

보도시점 2024. 1. 23.(화) 12:00 (2024. 1. 24.(수) 조간)

‘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조합원 수는 272만명

- ‘22년 노동조합 조직률 전년대비(‘21년 14.2%) 1.1%p 감소,
조합원 수는 전년대비(‘21년 293만명) 21만명 감소 -

‘24.1.23.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조직률은 1.1%p, 조합원 수는 21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2년 전국노동조합 조직 현황 ❖

▲ 조직률: 전체 조합원 수(2,722천명) / 조직대상 근로자 수(20,707천명) X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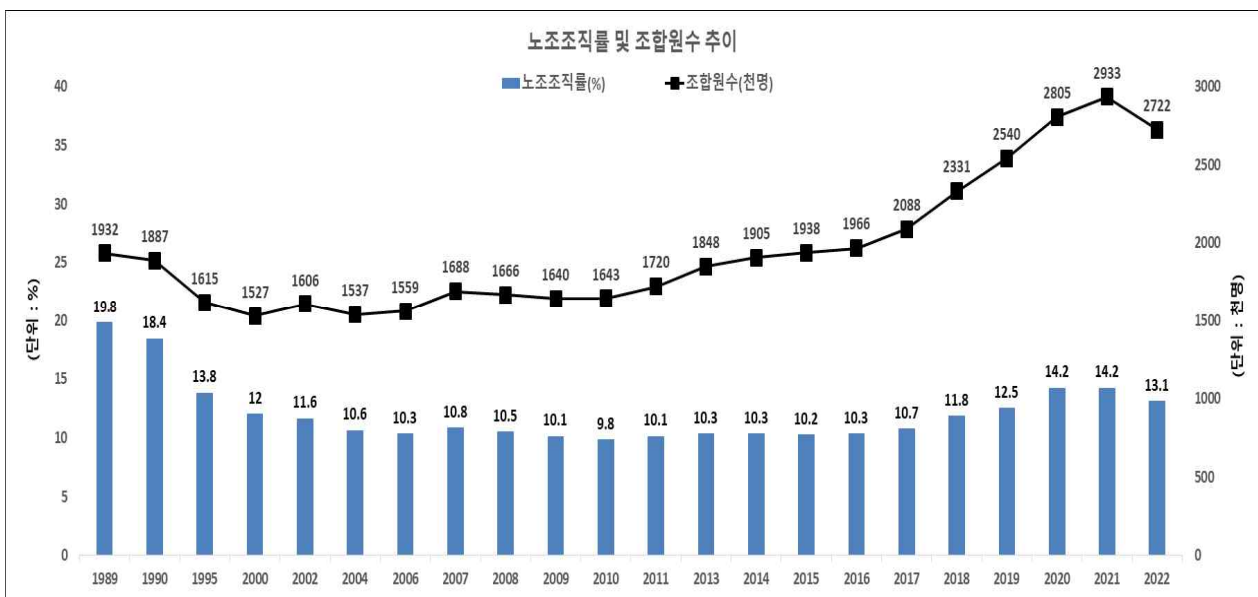
↳ 조직대상 근로자 수: 경활임금근로자 수(21,408천명)에서 노조 가입이 금지된 일부 공무원, 교원 제외(-701천명)

최근 노동조합 조직률을 살펴보면 2016년(10.3%)부터 2021년(14.2%)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은 13.1%로 감소하였다.

* 주요 국가의 노조조직률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영국: (‘10) 26.6% → (‘15) 24.7% → (‘21) 23.1% ▲독일: (‘10) 18.9% → (‘15) 17.6% → (‘19) 16.3%

▲미국: (‘10) 11.4% → (‘15) 10.6% → (‘21) 10.3% ▲일본: (‘10) 18.5% → (‘15) 17.4% → (‘21) 16.9%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 및 조합원 수 감소의 주요 원인은 아래와 같다.

①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그간 관행대로 신고되어 처리된 사항에 대해 통계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연구원과 협의하여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근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실체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중 ①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제28조①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하였고, ②사업장 폐업 여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하여 이미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노동조합 목록에서 삭제하였다.

- ▲ (노조 활동을 하지 않아 노동위 의결로 해산) 노동조합 41개소, 조합원수 1.8천명
(노조 실체 없음) 노동조합 1,478개소, 조합원수 81천명

② 건설부문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전년대비 감소한 조합원 수를 신고 하였다.

- ▲ <민>전국플랜트건설노조(21년10.6→22년 2.9만명), <미>건설산업노조(21년8.2→22년 0.8만명) 등

③ 한편, '22년에도 예년과 유사한 추세로 노동조합이 총 431개소 신설되어 조합원 수는 72천명 증가하였으나, 건설부문 조합원 수 감소,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오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수 감소 등이 더 커 노조조직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연도별 신설 노동조합 현황(개소): '18년(599)→'19년(529)→'20년(484)→'21년(568)→'22년(431)
- ▲ 한국노총 21천명, 민주노총 2천명, 미가맹(총연합단체 없음) 49천명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22천명, 민주노총 1,100천명, 미가맹 483천명 순이고,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641천명(60.3%), 기업별 노조 소속이 1,081천명(39.7%)으로 나타났다.

- ▲ 기업별 노조: 특정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구성원인 노동조합
- ▲ 초기업별 노조: 소속기업에 관계없이 같은 지역, 업종, 산업 단위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구성원인 노동조합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10.1%, 공공부문 70.0%, 공무원부문 67.4%, 교원부문 21.1%이고,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9%, 100~299명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나타났다.

* 사업장 규모별 노조조직률은 사업장 규모가 확인되는 기업별 노조 중심으로 집계된 것이고 전체 노조 대상 통계가 아니므로 추세 비교 등 한정적으로 활용할 필요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한 2022년 말 기준 현황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집계·분석한 결과이며, 노동조합이 신고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 조직률 등 주요 현황을 산정했다.

❖ 노조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 ① 노동조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 ②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변경신고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
 2.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원의 성명
 3.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

붙임: 2022년 노동조합 조직 현황

담당 부서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책임자	과 장	서명석 (044-202-7611)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박형서 (044-202-7395) 정재원 (044-202-7638)



붙임

2022년 노동조합 조직 현황

※ 조합원 수 등은 단위노조에서 신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연도별 노조 조직률 및 조합원수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조직률(%)	10.3	10.3	10.2	10.3	10.7	11.8	12.5	14.2	14.2	13.1
조합원수(천명)	1,848	1,905	1,939	1,967	2,089	2,332	2,540	2,805	2,933	2,722

□ 연도별 노동조합 수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노조수(개)	5,305	5,445	5,794	6,164	6,239	5,868	6,156	6,564	7,105	6,005

□ 연도별 민간·공공부문 조직현황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민간(%)	9.0	9.7	10.1	11.3	11.2	10.1
공공(%)	63.2	68.4	70.5	69.3	70.0	70.0

□ 상급단체별 조직현황

구 분		한국노총	민주노총	장애인노총	전국노총	대한노총	미가맹
22년	조합원수(명)	1,121,819	1,099,805	11,222	3,792	3,264	482,582
	노조수(개)	2,325	225	7	19	5	3,424
21년	조합원수(명)	1,237,878	1,212,539	'22년 신설	4,638	631	476,986
	노조수(개)	2,701	381	-	24	7	3,992

□ 조직형태별 조직현황

구분	기업별노조	초기업노조	총계
조합원수(명)	1,081,190 (39.7%)	1,641,294 (60.3%)	2,722,484 (100.0%)
노조수(개)	5,255 (87.5%)	750 (12.5%)	6,005 (100.0%)

□ 노동조합 규모별 조직현황

구 분	30명 미만	3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조합원수(명)	28,460 (1.0%)	96,265 (3.5%)	181,336 (6.7%)	2,416,423 (88.8%)
노조수(개)	2,310 (38.5%)	1,738 (28.9%)	1,077 (17.9%)	880 (14.7%)

□ 사업체 규모별 조직현황

구 분	30명 미만	3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임금근로자수(명)	12,058,000	4,187,000	2,149,000	3,011,000
조합원수(명) (조직률)	7,734 (0.1%)	56,245 (1.3%)	122,017 (5.7%)	1,111,163 (36.9%)